

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

법무처장 : 조미숙 ☎3410-7913 송무부장 : 강기연 ☎7920 담당 : 김예정 ☎7922

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사항
(25.5.19)을 반영하여 공사 정관을 개정하고자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함

I 관련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 - 조례 제명 및 제1조(목적), 제2조(경영의 기본원칙) 개정(시행 25.5.19.)

[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의 개발·정비, 토지의 개발과 공급, 주택의 건설·개량·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,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경영의 기본원칙)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II 추진경위

- 2025. 5.19.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
- 2025. 5.28.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 이사회 의결(수정의결)
 - 의결사항 : 정관 제명 및 제1조(목적), 제2조(명칭), 제9조(대행사업) 개정

Ⅲ 주요 개정 내용

□ 조례 개정사항을 공사 정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유지

○ 정 관 제명 및 정관 제1조(목적), 제2조(명칭), 제9조(대행사업) 개정

- 기관 명칭이 ‘서울주택도시공사’에서 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’로 변경됨에 따라 국문명 및 영문명 개정
- 국문명 : (현행) 서울주택도시공사 ⇒ (개정)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
- 영문명 : (현행) Seoul Housing and Communities Corporation
⇒ (개정) Seoul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

○ 제1조(목적) 개정

- 정관 목적에 ‘택지’를 ‘도시의 개발·정비, 토지’로, ‘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’을 ‘시민복지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’로 변경하여 공사 설립 목적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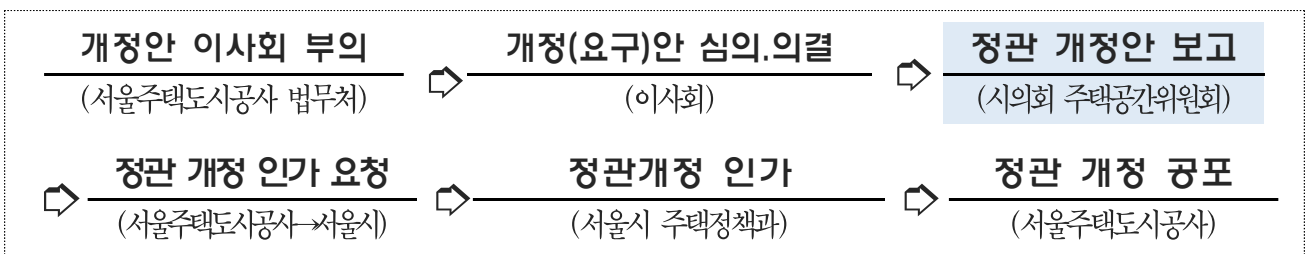
Ⅳ 향 후 계 획

○ ‘25. 6. : 정관 개정 인가요청(서울주택도시공사 → 서울시)

○ ‘25. 7. : 정관 개정 시장인가(서울시)

○ ‘25. 7. : 정관 개정 공포

< 참고 > 정관 개정 절차



[붙임]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. 끝.

[붙임]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

현 행	개 정	비 고
<u>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</u>	<u>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</u>	○ 기관 명칭 변경
제1조 (목적)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, 주택의 건설, 개량,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<u>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</u> 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「 <u>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<u>도시의 개발·정비, 토지</u> 의 개발과 공급, 주택의 <u>건설·개량·공급</u> 및 관리 등을 통하여 <u>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</u> 에 이바지하고 <u>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</u>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○ 조례 제명 변경 반영 ○ 조례안 반영 - 공사 설립 목적 확대 ·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각종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'지역 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'로까지 목적 확대 ○ 제413회 이사회 수정의결 - 조문 배열 등 자구수정 · 주택의 건설, 개량, 공급 →주택의 건설·개량·공급
제2조 (명칭) 이 공사는 <u>서울주택도시공사</u> (이하 "공사"라 한다)라 칭하고, 영문으로는 <u>Seoul Housing and Communities Corporation</u> 이라 칭한다.	제2조 (명칭) 이 공사는 <u>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</u> (이하 "공사"라 한다)라 칭하고, 영문으로는 <u>Seoul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</u> 이라 칭한다.	○ 기관명칭 변경 - 국문명 및 영문명 변경
제 9 조 (대행사업) ①~② (생략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<u>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(이하 "조례"라 한다)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 9 조 (대행사업) ①~② (생략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「 <u>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	○ 조례 제명 변경 반영 ○ 제413회 이사회 수정의결 - 조례명 표시 수정

현행	개정	비고
<u>〈신설〉</u>	부칙 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다른 사규의 개정) 이 정관 개정으로 공사 사규에서 사용 중인 사명은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.	○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사규의 사명 개정 의제

㉠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제 호

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

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”을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”으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의 개발·정비, 토지의 개발과 공급, 주택의 건설·개량·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, “Seoul Housing and Communities Corporation”을 “Seoul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사규의 개정) 이 정관 개정으로 공사 사규에서 사용 중인 사명은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.